

2018년  
시간급 **최저임금**  
**7,530**원

월 환산액 1,573,77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, 월 환산기준 209시간(주당 유급휴가 8시간 포함)

“**최저임금제도**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**법으로 강제하는 제도**입니다.”



2018. 1. 1 ~ 2018. 12. 31 적용

01

###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▶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▶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, 비정규직, 외국인 근로자 등)는 모두 적용됩니다. 다만,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02

###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?

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(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)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**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**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('18.3.20.시행))

03

###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?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	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
<p><b>매월 1회 이상 정기적·일률적</b>으로 지급하는 임금 (기본급, 직무수당, 직책수당, 기술수당, 면허수당, 특수작업수당, 벽직수당, 승무수당, 항공수당, 항해수당, 생산장려수당 등)</p>	<p>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(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, 정근수당, 근속수당, 결혼수당 등)</p> <p>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(연차휴가 근로수당, 유급휴가 근로수당, 유급휴일 근로수당, 연장시간근로·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, 야간근로 가산임금, 일·숙직 수당 등)</p> <p>③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(가족수당, 급식수당, 주택수당, 통근수당 등)</p>

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

**최저임금**

반드시 확인 !!!

04

##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

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**무효**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05

##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?

**최저임금 산입범위 = 「근로기준법」상 임금 -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**

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“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”을 제외하고,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

※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 시간(유급주휴시간 포함)

: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, 44시간인 경우(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)는 226시간

06

##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사용자는 **최저임금액,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,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,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월일**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
※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07

##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**에 처해지거나,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.

쉽게  
알아보는

## “최저임금 계산법”

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8년 2월 월급 1,685,000원을 받는 경우

01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.

월급명세서(2018년 2월)	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
기본급 1,450,000 원	기본급 1,450,000 원
직무수당 50,000 원	직무수당 50,000 원
시간외수당 65,000 원	
설상여금 100,000 원	
가족수당 20,000 원	
급여 계 1,685,000 원	<b>임금 계 1,500,000 원</b> 추려 낸 임금

02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

시간당임금 환산방법

추려낸 임금 ÷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

\* 209시간 = {(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 ÷ 7 X 365} ÷ 12월

03 2018년 적용 최저임금(시간급 7,530원)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.

1,500,000원 ÷ 209시간 = 7,177원 < 7,530원

최저임금 위반 —↑

\*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(www.minimumwage.go.kr)